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19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김도읍 • 권성동 • 박대출

구자근・조승환・곽규택

주진우 • 이성권 • 정희용

조지연 • 박형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노후준비 지원법」의 개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조(「모자보건법」의 개정)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18세 미만인 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15조의19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3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피성년후견인
- 제4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제5조(「의료법」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제48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6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7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제12조(결격사유)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2.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15조의2(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	
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u>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u>	1. <u>18세 미만인 자 또는 피성년</u>
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u> 후견인</u>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
격) ① (생 략)	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	
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u>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u>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제5조(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	
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	
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u>2. 피성년후견인</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5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3. 피성년후견인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제8조(결격사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	
료인이 될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피성년후견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임원) ① ~ ③ (생	제48조의2(임원)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2. 피성년후견인
<u>견인</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업허가 등) ① ~ ⑤ (생 략)	업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6
해당하는 자는 첨단바이오의약	
품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	
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u>2. 피성년후견인</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	
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	
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u> , 피한정후견인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u>
또는 미성년자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